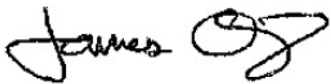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Central Justice Center 700 W. Civic Center Drive Santa Ana, CA 92702	
SHORT TITLE: Kim vs. Kwon	
CLERK'S CERTIFICATE OF MAILING/ELECTRONIC SERVICE	CASE NUMBER: 30-2019-01076323-CU-NP-CJC

I certify that I am not a party to this cause. I certify that the following document(s), Statement of Decision dated 08/14/19, have been transmitted electronically by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at Santa Ana, CA. The transmission originated from Orange County Superior Court email address on August 14, 2019, at 4:25:10 PM PDT. The electronically transmitted document(s) is in accordance with rule 2.251 of the California Rules of Court, addressed as shown above. The list of electronically served recipients are listed below: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Clerk of the Court, by:  Deputy

FILED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CENTRAL JUSTICE CENTER
 AUG 14 2019
 DAVID H. YAMASAKI, Clerk of the Court
 BY: J. OLIVAREZ DEPUTY

SUPERIOR COURT OF THE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ORANGE - CENTRAL JUSTICE CENTER

JIN HONG KIM, an individual; YON
 SUNG KOO, an individual; and SOO
 EAON SHIN, an individual,
 Plaintiffs,
 v.
 DAVID KWON aka NAM HYUK KWON,
 an individual; BOKSUP LEE, an
 individual; HARRIS KWON aka HYUK
 JUNG KWON, an individual; ERIC
 SONGHO LEE, an individual; ILKWON
 LEE, an individual; YOUNG JO SHIN,
 an individual; Does 1-50, inclusive,
 Defendants.

Case No. 30-2019-01076323
 STATEMENT OF DECISION RE: CORPORATIONS
 CODE § 9418 HEARING
 Hon. MARTHA K. GOODING
 Dept. C32

1 본 소송은 캘리포니아 비영리 종교단체인 얼바인 침례교회("교회")를 누가 치리하는지 또는
2 행정권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3 원고 김진홍, 구연성, 그리고 신수연(통칭하여 "원고들")은 캘리포니아 회사법 제 §9418 조에
4 근거하여 세 명의 원고가 본교회의 이사로서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정당하게 임명되었는지에
5 대한 확인을 법원에 요청 하였다. 피고는 David Kwon (aka 권남혁), 이복섭, Harris Kwon(ask
6 권혁중), Eric Lee(이성호), 이일권, 그리고 신영조(통칭하여 "피고들")이다. 원고는 상기 6 명의
7 피고들이 본교회의 이사회 멤버라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David Kwon 은 이사회 의장이라고
8 사실이 아닌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9 회사법 제 §9418 조에 따라 신속한 공판 날짜를 정하는 명령에 관한 원고의 긴급가처분 신청(Ex
10 Parte)에 대한 응답으로, 법원은 2019 년 7 월 23 일에 증인심문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피고들은
11 법원이 법 제 §9418 조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한 증인심문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12 양측은 캘리포니아 비영리 종교단체로서 교회가 회사법 제 §9418 조를 따라야 하며 공판 일정이
13 신속하게 정해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14 회사법 제 §9418 조는 비영리 종교단체를 관장하는 한 부분이며 다음과 같다.¹

15 "어느 회사의 정관이나 사규에서 정한 구제책이 소진된 이사나 회원, 또는 투표권이 있는
16 어느 개인이, 이사 또는 회원, 또는 누가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소송을
17 접수하였을 때, 해당 카운티의 관할 법원은 그 기업의 이사의 선출 또는 임명의 유효성에
18 대해 판결을 내려야 한다".

19 원고측 변호사는 법 제 §9418 조에 대한 공판은, 교회의 이사(Director) 뿐만 아니라 그
20 임원(Officer)의 임명의 적법성도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21 문자대로 보면, 법 제 §9418 조는 법원이 회사의 "이사(Director)"의 선출 또는 임명의 적법성만을
22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법 제 §9418 조 (a)항). 이것은 제 §9418 조 (c)항에 의해
23 강조되며, 이 법은 "이 법원의 규정이 이 부분의 조항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24 조항 및 조례에 따라 이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또는 새로운
25 선거가 열리거나 지명되도록 명령할 수 있다." §9418 (c). 따라서, 법원은 제 §9418 조의 공판의

¹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추가 법적 인용은 회사법을 의미한다.

- 1 범위를 정식으로 선출 또는 임명된 교회 이사라고 주장하는 3 명의 원고가 교회 이사회에 적법하게
2 선출되거나 임명되었는지 여부로 제한했다.
- 3 법원의 사실확인 및 결정을 제시하기 전에 당사자가 제기한 주요 쟁점을 요약한다.

4 원고측 주장

- 5 원고들은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회의 이사회 멤버로 정당하게
6 선출되었고 임명되었다고 주장한다.

7 원고 김진홍에 관해: 원고들은 김진홍이 상당 기간 동안 그리고 현재도 교회 집사장이며 안수
8 집사위원회 멤버라고 주장한다. 2019 년 2 월 17 일부로 안수집사회에서 David Kwon 목사를
9 선임 부목사에서 일반 부목사로 직위를 강등하였을 때, 김진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회
10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1) David Kwon 의 직위가 강등되었을 때, 교회는
11 여전히 담임목사가 없었고 더 이상 선임 부목사도 없었다. 2) 그러므로, 김진홍은 집사장의
12 직분으로 교회 헌장에 의해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었다². 김진홍은 집사직에서 물러난 적도
13 없고 집사장으로서 계속 있었으며, 그러므로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14 주장한다.

15

16 원고 구연성에 관해: 원고들은 구연성이 2019 년 1 월 1 일에 안수집사회에 의해 정식으로 교회의
17 서기로 임명 받았다고 주장한다, 구연성은 한번도 서기직에서, 또는 집사직을 정당하게 박탈당한
18 적이 없다. 따라서 그는 서기로서 이사회 멤버가 된다고 주장한다.

19

20 원고 신수언에 관해: 원고들은 신수언이 안수집사회로 부터 교회의 재정사역 팀장으로 임명
21 받았다고 주장한다, 신수언은 한번도 재정사역팀장에서, 또는 집사직에서 정당하게 박탈당한
22 적이 없다. 따라서 그는 재정사역팀장으로서 이사회 멤버가 된다고 주장한다.

23

24

피고측 주장

² 증거물 101 으로 채택된 헌장이 장(“Ch.”)와 조(“Art.”)으로 인용되어 사용되었다.

1 피고들은 David Kwon 의 교회에서의 고용 상태가 안수집사회에 의해서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2 아니라고 주장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David Kwon 이 선임부목사에서 일반 부목사로
3 강등되었고 그 후에 일반 부목사로서의 위치에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4 피고들은 다음 두가지를 주장한다. (1) David Kwon 은 선임 부목사이고 교회 이사회의 당연직
5 의장이다. (2) 그러므로 원고 김진홍은 집사장으로서 의장직을 이어받는 것을 할 수도 없었고
6 그리고 하지도 않았다. 일면으로는, 피고들은 또한 김진홍은 제직회와 총회에서 정당하게 그의
7 집사직이 박탈되었고 그는 더 이상 집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될 수 없다
8 라고 주장한다.

9 구연성과 신수언에 대해서는, 피고들은 그들이 2019 년 2 월에 정당하게 선출된 서기와
10 재정사역팀장 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들은 제직회에서 2019 년 3 월
11 17 일 투표로 구연성과 신수언을 집사로서의 위치를 박탈하였고 그 결과를 2019 년 3 월 31 일
12 총회에서 인준받아 확정지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게다가 집사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13 구연성과 신수언은 더 이상 서기직과 재정사역팀장직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직책이 없으므로
14 더이상 이사회 멤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5

증인 심문

16 증인심문에서 양측은 증언을 각각 4 시간씩으로 제한한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양측이 정한 규정을
17 수락하고 그 규정에 따라 심문을 진행하도록 명령했다. 양측은 또한 증거물 3, 6, 7, 24, 31, 32 및
18 33³은 배제하고 증거물 101-115 및 1-40 의 모든 이용을 허용하도록 확인했다. 또한 증인 배제
19 명령 및 증거물 2A 를 배제하는 것 그리고 증거물 2B 의 번호를 증거물 2 로 변환하는 것에 대해
20 확인했다.

21 또한, 양측은 교회 헌장(증거물 101)의 제 8 장 제 3 조의 영문번역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22 알렸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공인 통역사 Soomi Ko 로 하여금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23 증언을 위해 한국어/영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법원에 해당 조항의 번역을
24 제공하도록 하였다. 양측은 논쟁이 된 조항에 대한 통역사 Soomi Ko 의 번역에 인정기로 동의했다.

³ 양측은 최종 변론에서 사실상 증거물 106 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1 증거물 101 에는 통역사 Soomi Ko 가 핸드라이팅으로 수정한 제 3 조의 수정 번역도 포함한다.
2 (증거물. 101 at 8 참조).

3 증인심문은 2019 년 7 월 23 일과 24 일에 잠깐씩 휴정하면서 열렸고, 최종 변론이 2019 년 7 월
4 31 일에 있었으며, 모든 재판 후 서면 추가 자료는 2019 년 8 월 1 일까지 법원에 제출되었다.

5 양측은 판결문을 요청하였고 다음의 절차에 동의했다.

6 법원은 예비판결문을 작성하여 양측에게 제공하면, 양측은 7 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7 시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이의 제기를 검토한 후, 법원은 최종 판결문을 공표한다 ⁴.

8 법원은 2019.8.6. 예비판결문을 발행했고, 그 후 원고가 수정요청을 제출했고, 피고는 예비
9 판결문에 대해 상세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양측의 문서를 충분히 주의 깊게 고려했다.

10 여기에 제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함에 있어 법원은 재판에서 인정된 모든 증언과 증인심문에서
11 제출된 증거물들 뿐만 아니라 최종 변론에서의 진술, 증인심문 이후의 최종변론서 및
12 예비판결문의 이의신청 기간에 제출된 수정요청서/반박서를 신중하게 고려했다. 따라서 법원의
13 사실관계 확인 및 결론은 선서후 증언한 증인 각 사람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14 증거여부를 결정한다. (증거법 780; CACI 5003 를 참조). 사실관계 확인(A trier of fact)은
15 직접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증인의 증언의 일부를 적절히 거부할 수 있으며, 수용된 부분에
16 대해서는 다른 증인의 증언에 대한 추론과 결합함으로써, 마치 선택된 사용가능한 재료로부터
17 진리의 천을 짜듯이" (Nevarov v. Caldwell (1958) 161Cai.App.2d 762, 777, 인용은 생략됨)
18 법원은 이 법정에서 그렇게 했다.

19 증인심문 과정에서 제시된 신뢰할 만한 증거와 증인들부터 얻은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20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확인과 결론을 내렸다.

21

⁴ 피고들은 법원이 7 일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예비판결문을 8 월 10 일 까지 받지 못해서 며칠 더 시간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예비판결문을 2019 년 8 월 7 일자로 피고들의 변호사 주소로 메일 발송했다. 피고들의 변호사가 본소송에서 종이문서 대신 이메일 서비스를 요청하지 않아서, 당시 메일 서비스가 법원이 피고들한테 송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여하튼, 피고들은 이의신청 종료 하루전인 2019. 8. 13자로 매우 자세한 반박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1 사실관계 확인 및 결론

2 교회는 미국 남침례 교단 소속이다. 교회를 치리하는 문서는 얼바인침례교회 헌장 ("헌장")이다.
3 양측은 현재 적용되는 헌장이 2017 년 8 월에 교회 총회에 의해 인준되어 2017 년 9 월 1 일부터
4 발효되었다는 것에는 반대의견을 달지 않았다. 증거물. 101. 참조. 따라서, 양측은 본소송이 2017
5 년 헌장에 의해 판결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법원은 그에 의해 판결한다.

6 헌장은 일반적으로 "행정 권한은 총회에 있으며, 교회의 효과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7 임무는 교회가 지명한 임원이나 대표가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추가로 "특별한 규정이
8 없는 한 교회는 Broadman Church Manual 과 Robert's Rules of Order 를 따른다." 라고
9 명시하고 있다.

10 회사법 제§9418 조 공판은 그래서 법원으로 하여금 헌장의 용어들을 해석하고 적용할 것을
11 요구한다.

12
13 총회

14 교회의 치리 구조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보다도 총회는 "교회의 최종 입법 기관"이다.
15 증거물 101, 제 7 장에서, 교회의 총회는 최소 18 세 이상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증인신문
16 과정에서 증언으로 볼때, 이 사건 분쟁의 주요 기간인 2019 년 2 월/3 월에 대략 300 명의
17 정회원이 있었다 ⁵. 담임목사는 총회의 당연직 의장이며, 의장의 부재시 선임부목사, 집사장
18 순으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⁵ 법원의 예비판결문에 대한 원고의 수정요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총 497 명의 정회원이 있었다고 하면서 2019. 3. 26 자 정회원 명부(원고가 Exhibit 26 으로 제출하였던 자료 이고, 쌍방이 증인신문에서 증거로 채택하기로 확인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Exhibit 26 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문서인지, 누가 준비했는지, 언제 그리고 왜 이 자료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정회원 명부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 없었다. 그러한 증언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Exhibit 26 이 분쟁이 발행한 그 기간 기준으로 정확한 정회원 숫자를 반영한 것이라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증인신문에서는 Exhibit26 은 논쟁이 없었고, 유일한 증언은 교회의 정회원이 대략 300 여명 이라는 것이다.

1 의장은 최소 1 년에 두 번 정기 총회를 소집하며 주보에 총회 2 주전에 주보⁶에 공고한다. (증거물
2 101, Ch. 7, Art. 3 at 7). “임시총회는 특별한 경우에, 담임목사 또는 제직회에 의해 소집될 수
3 있으며 미팅 2 주전에 주보에 공고한다.

4 총회의 역할은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인준하고, 시무안수집사, 권사 및 목사 안수에 관한 사항을
5 인준하고, 담임목사의 청빙, 재신임 및 사면을 인준하고, 교회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6 사항을 인준하고, 헌장 개정안을 인준한다. (증거물 101, Ch. 7, Art. 4 at 7).

7

8 제직회

9 교회행정의 다음 단계는 제직회이다. 제직회 구성은 담임목사, 선임부목사, 행정담당목사, 시무
10 안수집사와 만 70 세 이하의 전임안수집사, 시무권사, 그리고 사역팀장으로 구성된다. (증거물
11 101, Ch. 8, Art. 1 at 8). 총회와 마찬가지로, 담임목사가 당연직 의장이 되며, 의장의 유고시는
12 선임 부목사, 집사장 순으로 대행한다. (증거물 Ch8, Art. 2 at 8).

13 의장은 매 분기별로 정기 제직회를 소집하며 1 주일전에 교회 주보에 공고한다. 필요시 주요
14 안건에 대하여 담임 목사, 안수집사회 또는 제직회원 2/3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 제직회를 소집할
15 수 있으며 1 주일전에 교회 주보에 공고한다. (증거물 101, Ch8, Art. 3 at 8).

16 제직회의 역할은 안수집사회의 결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헌장 개정, 예산과 결산, 재산의 취득
17 및 처분, 담임목사의 청빙과 사면, 재신임을 “상기 의결내용을 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다룬다.
18 (증거물 101, Ch. 8, Art. 4 at 8). 제직회는 또한 교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하는
19 권한과 헌장에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위임 받았다.

20

21 안수집사회

22 다음 의결기관은 안수집사회이다. 그 구성원은 담임목사와 특정되지 않은 숫자의 시무안수집사로
23 구성된다. 헌장은 시무 안수집사의 수를 결정하는 공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 정회원 수에
24 따라 정해진다. (증거물. 101, Ch. 9, Art. 1 at 9). 2019 년 2 월 1 일 기준, 안수집사회에는 3

⁶ 교회주보는 주일예배에서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소식지 또는 간지를 일컫는다.

1 명의 시무안수집사가 있었다. 양측은 이 숫자의 정확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법원도
2 그 숫자가 맞다고 판단한다.

3 담임목사는 안수집사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담임목사의 유고시에는 선임부목사 또는 집사장의
4 “순서대로” 의장이 된다. (증거물. 101, Ch. 9, Art. 2 at 9). 의장은 매달 1 회 이상 안수집사회를
5 소집하여야 하며 의장 또는 집사장이 안수집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헌장은 안수집사회의 소집을
6 위해 사전 서면통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7 안수집사회의 임무는 여러 임무 중에 다음을 포함한다: 총회와 제직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8 심의 결정하며;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타 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9 검토하여 제직회에 상정한다. (증거물. 101, Ch. 9, Art. 4 at 9)

10

11 집사장

12 집사장은 시무안수집사중에서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증거물. 101, Ch. 9, Art. 6 at10). 2019 년
13 2 월 1 일자 기준, 원고 김진홍은 집사장으로 적법하게 임명되어 2 번째 1 년 임기의 집사장에
14 직무중 이었다.

15

16 이사회

17 교회 이사회는 최소한 3 명의 구성원, 즉 담임목사, 서기와 재정사역팀장으로 구성된다. (증거물.
18 101, Ch. 11, Art. 1 at 11). 담임목사는 이사회 의장의 당연직 의장이 되며, 선임부목사 또는 집사장이
19 “그 순서대로” 담임목사의 유고시에 의장이 된다. (같은 증거물. Art. 2 at 11). 따라서 교회에
20 담임목사나 선임부목사가 부재한 경우 집사장은 이사회 의장의 구성원이 되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21

22 서기 및 재정사역팀장

23 서기와 재정사역팀장의 직위는 헌장 제 14 장에서 다루고 있다. 제 1 조 (“서기”) 제직회의 서기는
24 제직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서기를 겸임한다고 규정한다. (증거물. 101, Ch. 14, Art. 1at 14).
25 서기는 시무안수집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 2 조 (“재정”) 재정사역장은 시무안수집사 중 한
26 명이여야 한다고 하고, 안수집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물. 101, Ch. 14, Art. 2
27 at 15). 재정팀장(Finance Team Leader) 와 재정사역팀장(Financial Ministry Team
28 Leader)는 같은 직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바꾸어 사용되곤 한다.

1

2 첫번째로 결정해야 할 문제는 담임목사와 선임부목사가 부재하는 경우 원고 김진홍이
3 집사장으로서 이사회 의장으로 유효하게 선임되는가에 있다.

4 이 문제를 위해 법원이 먼저 다음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David Kwon 의 고용 상태가
5 안수집사회 결정으로 선임부목사에서 부목사로 변경된 것이 유효한가(따라서 담임목사와
6 선임부목사직이 공석이 되어 집사장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2) 그 후
7 김진홍이 제직회와 총회에 의해 집사(및 집사장)로서의 직책에서 유효하게 면직되었는지의 여부;
8 그리고 (3) 김진홍이 아닌, 박청직 목사(이하 Rev.Park)가 David Kwon 목사의 해임에 따라
9 담임목사와 이사회 의 멤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임부목사로 선임되었는지 여부를
10 결정해야 한다.

11 안수 집사회는 헌장에 의거하여 David Kwon 목사의 고용상태를 제직회 또는 총회에 의해 인준을
12 받지 않고도 선임부목사에서 부목사로 변경할 (그후 고용을 종료할) 권한이 있었는가?

13 법원은 안수집사회는 그 권한이 있다고 판결한다.

14 2018 년 교회의 당시의 담임목사였던 박경호 목사(박청직 목사와 관련이 없음)가 퇴임할 당시,
15 David Kwon 은 선임부목사 였다. 이전에 최소한 한명 이상의 선임부목사가 있었지만, David
16 Kwon 은 그 당시 (그리고 그의 직위가 부목사로 변경될 때 까지는) 교회의 유일한 선임부목사
17 였다 ⁷. 그러나 David Kwon 은 결코 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된 적이 없다. 대신, 그는 담임목사의
18 직책이 공석인 동안 단순히 담임목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청 받은 것 (그 업무 수행을 한 것)

⁷ 원고, 피고 양측은 David Kwon 이 현재의 헌장(2017 년 9 월 1 일 발효)에 의해 제직회 또는 총회에서의
그 투표에 대한 인준을 거치지 않고, 2017 년 10 월 안수집사회의 투표에 의해 부목사에서 선임부목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것에 대해 다툼이 없다. (실제로, David Kwon 은 그가 부목사에서 선임부목사가
될 때에 제직회 또는 총회에서의 인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헌장에 따라
안수집사회의 “모든 결정”이 제직회 또는 총회에서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측의 주장은,
최소한 헌장의 규정과 과거의 관행 모두에서 비추어볼 때 모순이 된다. 법원이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David Kwon 은 결코 선임부목사가 된 적이 없고 부목사 이상이 된 적이 없다는,
피고측에서도 결코 원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 뿐이다. David Kwon 이 일시적, 임시적 차원에서 담임목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도 그는
2 선임부목사로 남아 있었다.

3 David Kwon 은 결코 교회의 담임목사로 고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분명하다. 헌장에 명시된
4 바와 같이 담임목사를 청빙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다. 일단, 담임목사직에 공석 (또는
5 담임 목사의 사임)이 생기면 제직회는 5~7 명의 청빙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증거물. 101, Ch.
6 13, Art. 3 at 12). 그 다음, 청빙위원회는 담임 목사 후보를 추천하고, 그 후 후보는 두단계의
7 절차를 거쳐서 인준되어야 한다. 첫째, 청빙위원회로 부터 추천된 후보를 제직회에서 최소 3/4 의
8 찬성으로 인준해야 하고, 그 다음 총회의 최소 3/4 이 인준해야 한다.

9 David Kwon 에게는 이런 절차가 없었다. 박경호 담임목사가 퇴임했을 때, David Kwon 은 새로운
10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단지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는 헌장에서
11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선임부목사는 담임목사 유고시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2 규정하고 있다. (증거물. 101, Ch. 13, Art. 3). 따라서 David Kwon 이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13 요청 받았을 때의 그의 직책은 여전히 선임부목사였다.

14 따라서 안수 집사위원회가 David Kwon 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 헌장 13
15 장, 제 3 조에 있는 부목사에 관한 조항이 적절한 것이다. (증거물 101. 13-14).

16 담임 목사를 고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부목사를 고용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부목사를
17 고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담임목사가 채용권고를 하고, " 채용결정은 안수 집사위원회의 검토에
18 따라 결정된다." (증거물. 101, 13 장. Art 3, Sec3 at 14). 헌장은 부목사를 고용시 제직회 또는
19 총회를 포함하여, 어떤 개인 이나 위원회 또는 교회 어느 기관에 의해 인준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20 부목사를 해임하는 절차 역시 채용과 비슷하다. 헌장은 해고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해고는 "안수
21 집사회의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물. 101, Ch. 13, Art. 3, Sec 5
22 (3) at 14⁸). 부연하자면, 헌장은 제직회 또는 총회를 포함하여 어느 개인이나 위원회 또는 기타
23 교회 기관의 인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회의 헌장에 명확히 명시된 것처럼 헌장은 명확히 담임
24 목사의 채용/해고 결정에 대해서만 인준을 요구하고 있다.

⁸ 1)과 2)는 부목사 사임하고자 할 경우, 또는 사임을 권고 받을 경우에 그 절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가지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다. David Kwon 목사는 비자발적으로 해임되었다.

1 부목사(선임부목사 또는 당사자들이 "일반"부목사로 지칭하는 것) 해임에 적용되는 그러한 인준
2 규정은 없으며, 안수집사회에서 David Kwon 을 강등시키고, 이후 해임키로 투표했을 때 그의
3 포지션이 부목사 였다 ⁹.

4 2019 년 2 월 17 일, 안수집사회의 투표에 의해 David Kwon 의 고용 상태가 선임 부목사에서
5 부목사로 변경되었다. David Kwon 은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 실제로
6 그가 그 회의를 소집했다. 결과적으로 David Kwon 은 선임부목사에서 해임되었고,
7 "일반"부목사로 되돌아 갔다.

8 같은 안수집사회는 2019 년 3 월 15 일 그를 해임(교회와의 고용관계를 종결) 하기로 결정했다.
9 3 월 15 일 미팅이 불법적으로 소집되고 진행되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David Kwon 은 그
10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일반 부목사였고, 그는 더 이상 안수집사회의
11 일원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David Kwon 은 2019 년 3 월 15 일자 문서로 해임 사실을 통보 받았다.
12 그 편지는 시무안수 집사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과 "담임목사대행 박청직 목사가 서명했다.
13 (증거물. 104). 이 편지는 2019 년 3 월 15 일 David Kwon 에게 통지되었고, 그래서 교회와의
14 고용관계 해지는 그날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다.

15 피고들은 안수집사회가 정족수 요건을 만족하지 않았다거나 David Kwon 을 강등하거나
16 해임시키기에 충분한 투표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17 성공하지 못했다. 헌장에 의하면, 안수집사회는 담임 목사 (또는 헌장에 규정된 담임목사유고시
18 선임 부목사)와 세 명의 안수 집사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안수 집사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 한 3
19 명의 안수집사는 그 자체로 회원의 3/4 을 구성한다.

20 헌장은 안수집사회 개회를 위해 안수집사회 구성원의 2/3 의 출석과 가결은 출석인원 2/3 의
21 투표를 요구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3/4 의 찬성표를 요구한다. (증거물. 101, Ch. 9,
22 Art. 5).

23 세명의 시무안수집사인 김진홍, 구연성 그리고 신수언은 2 월 17 일과 3 월 15 일 David Kwon 이
24 강등되고 해임된 안수집사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 세명 모두가 찬성 투표를 했다. 따라서 David

⁹ 부목사를 고용하고 해임하는 안수집사회의 권한에는, 논리적으로 선임부목사를 부목사로 강등시킬 권한도 포함 된다

1 Kwon 에 대한 강등, 해고 결정이 내려진 회의에서 각각 정족수 요건은 충분하였으며, David
2 Kwon 에 대한 결정은 안수집사회 구성원의 3/4 이상의 투표로 적법하게 통과되었다.

3 결론적으로, 법원은 안수집사회가 David Kwon 을 선임부목사에서 부목사로 강등시킬 권한을
4 가졌다고 (후에 그를 부목사 직위에서 해고시킬 권한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한 절차는
5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2019 년 3 월 15 일부터 David Kwon 은 교회 피고용인
6 신분이 아니므로 교회나 그 위원회 또는 기타 단체를 대신하여 또는 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권리
7 나 권한이 없다.

8 법원 심리에서 피고들은 안수집사회가 David Kwon 의 해임을 의결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9 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David Kwon 은 자신의 목회 사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10 경우에만 해임될 수 있었고, 자신의 목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11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증거물. 101, Ch. 13, Art.3). ("부목사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결격
12 사유가 발견되면", 그 문제는 "안수집사회의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본
13 법원의 판단범위를 벗어난다. 본 법원은 David Kwon 이 훌륭하고 유능한 목회자인지 판단하는
14 것, 그리고 교회 정책이나 종교 교리에 따라 목회 직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15 것이 부적절하다. (Singh v. Singh (2004) 114 Cai.App.4th 1264. 참조)¹⁰

16 법원은 또한 3 월 15 일 현재, 담임목사 및 선임부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집사장으로서 김진홍이
17 교회 이사회 의장이 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박창직 목사는 담임목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18 선임 부목사로 고용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분란에 휩싸인 교회가 담임목사 또는 선임부목사
19 어느 한분도 없이 예배를 하고 있었기에 회중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 임시목사로 교회에 들어왔다.
20 현장은 "이 현장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는 모든 문제"는 "전통, 과거 관행 및 상식"에 기초하여
21 다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물. 101, Ch. 19 at 19). 과거에도 최소 한번, 담임목사에
22 대한 불화와 갈등이 있었을 때, 안수집사회는 임시목사로 사역을 위해 원로 목사를 다시

¹⁰ 본 소송의 분쟁 중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2019 년 4 월경 제출된 Statement of Information 의 내용에 관하여 법원심리에서 상당한 증언들이 있었다. 이 문서는 교회의 행정권을 장악하려는 그들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명백한 노력으로 어느 한쪽파벌의 한 명 이상의 회원들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법원은 문서가 관련성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했고, 그 안에 포함된 정보도 확실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누가 적법하고 올바르게 선택된 교회의 이사인지를 판단하는 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본다.

1 데려오기로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교회 자체의 전통이나 과거 관행은 안수집사회에 권한을
2 부여하여 임시로 박청직 원로 목사에게 새 담임목사와 선임 부목사가 청빙될 때까지 담임목사의
3 기능을 수행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더우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상식적으로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4 경우 -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다음 선임 부목사도 없기 때문에 - 안수집사회가 인사위원회로서
5 공석이 채워질 때 까지 누군가를 임시 목사로 봉사 할 수 있도록 고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6

7 다음 질문은 제직회와 총회가 적법하게 David Kwon 의 해임을 철회하기로 했고, 김진홍, 구연성
8 및/또는 신수언을 집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적법하게 투표했는지 여부이다 ¹¹.

9 법원은 그들이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다. 그러한 투표는 있었다 할지라도 교회 헌장에
10 부합하지는 않았다.

11 교회 헌장은 제직회와 총회의 소집과 회의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12 있다.

13 제직회의 특별 회의 :

14 제직회를 관장하는 헌장 제 8 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a) 담임목사, 안수집사회 또는
15 제직회원의 3 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중요한 문제 관련하여 특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회의
16 1 주일 전에 매주 교회 주보에 공고한다." (증거물 101, Ch. 8, Art. 3 at 8). 2019 년 3 월 부로
17 제직회원은 총 56 명 있었다 ¹².

¹¹ 양측은 적법하게 소집되고 개최된 교회의 최종 입법기관으로서 총회에서, 안수집사회의 인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무효화(override) 할 수 있고, David Kwon 이 교회의 담임목사로 선출되도록 유효하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회 멤버들의 원하는 바를 결정하기 위해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양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법적 조치에 의지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¹² David Kwon 은 특별 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제직회의 구성원 수는 56 명이라고 여러 번 증언했다. 그는 후에 그의 변호사 질문에 답하면서, 제직회원이 55 명의 회원만 있다고 증언했다. 왜냐하면 한명의 제직회원이 그에게 다른 교회로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법원은 제직회원이 56 명이라는 최초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David Kwon 이 정족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숫자를 하향 조정하려는 의도로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제직회원의 사임은

1 특별(임시) 총회 :

2 총회를 다루는 헌장 제 7 장은 "특별총회는 담임 목사 또는 제직회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으며
3 회의 2 주 전에 교회주보에 공지한다." (증거물. 101, Ch. 8, Art. 3 at 8). 이 총회 당시 교회에는
4 약 300 명의 정회원이 있었고, 개회정족수는 단지 50 명의 정회원으로 개회될 수 있다. (증거물.
5 101, Ch. 7 at7) 총회의 대부분의 결정은 안건에 대한 투표의 50 % 이상만 요구하지만, 헌장개정과
6 담임목사 임명, 안수 집사 인준 "은 출석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7 쟁점이 된 총회는 이 절차대로 따르지 않았다.

8 David Kwon 은 3 월 15 일 자신의 해임사실을 알게 된 즉시 2019 년 3 월 17 일 제직회(보다
9 정확하게는, 회의 소집 시도-purported to call a meeting)를 소집했다. 그는 3 월 15 일에
10 카카오톡¹³ 문자 메시지를 제직회원들에게 보내서 3 월 17 일에 제직회가 있다고 알렸다.

11 그 후 그는 2019 년 3 월 16 일 밤 10 시쯤에 58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어 3 월 17 일 회의를 자신이
12 주장하는 제직회의 의장의 권한으로 소집하였다. (증거물 105). 4 명의 제직회원에게는 이메일이
13 전송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14 이러한 방식은 교회 헌장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다. 3 월 17 일 특별 제직회는 적법하게 소집되지도
15 않았고 정당하게 개회된 것도 아니다.

16 첫째, David Kwon 은 3 월 17 일 특별 제직회의를 소집할 때 그는 교회의 목사로 고용된 상태에
17 있지 않았고, 더 이상 교회에 담임목사나 선임부목사는 더더욱 아니었다. 그는 더 이상 제직회의
18 의장이 아니었고 제직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다¹⁴.

19 둘째, 교회 헌장은 제직회원들의 특별 회의에 대한 소집 통지가 적어도 회의 1 주일 전에 주어져야
20 하며 그러한 통지는 "회의 1 주일 전에 매주 발행되는 교회 주보에 발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1 (증거물 101, Ch. 8, 3 항). 이 조항이 명백히 중요한 점은 특별제직회의 1 주일 전 공지가 제직회원

서면 사임이 필요한데, (증거물 101, Ch. 8 Art. 1). 서면 사임의 증거가 없다. 이 회원이 그에게 교회를
떠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David Kwon 의 유일한 증거인데, 법원은 이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다.

¹³ KaKao Talk 는 한국인 공동체에서 널리 사용되는 문자 메시지 발송 앱이다.

¹⁴ 특히 David Kwon 은 자신이 2 월 17 일과 3 월 31 일 사이에 약 1 개월간 선임부목사가 아니었다고
증인신문에서 증언한 바 있다.

1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공지는 반드시 교회 주보를
2 통해 제공되도록 요구 된다.

3 David Kwon 이 3 월 15 일과 16 일에 보내 준 통지는 그러한 공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4 제직회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것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1 주일전 공지에
5 훨씬 미치지 못하는, 단지 3 월 15 일과 3 월 16 일이었다. 게다가, 교회 회원들에게 제공된
6 유일한 공지는 3 월 17 일 일요일 예배에서 교회 주보와 함께 전달된 전단지(Flyer)였으며,
7 문자 그대로 그날 오후에 열릴 제직회가 개최되기 몇 시간 전에 공지되었으며 현장에서 요구하는
8 1 주일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9 요컨대, 제직회원이나 교회 성도 그 누구도 모두 현장에서 제시한 방식에 의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10 못했다.

11 피고들은 3 월 17 일의 제직회에서 David Kwon 이 복권이 되었고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은
12 (시무안수)집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을 주장하며 이날의 제직회가 "새로운" 회의 또는 "특별한"
13 회의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는 2 월 24 일 제직회의 "연속(속개)"이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14 애매한 공지 문제를 피하려고 했다. 법원은 이 증언이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며 신뢰할 수 없다고
15 판단한다.

16 법원은 3 월 17 일 회의가 2 월 24 일 이전의 제회의의 "계속" 또는 "휴회"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17 이는 교회 현장의 공지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 새로운 특별회의 였다 ¹⁵.

18 적법하게 소집된 특별 제직회가 후일로 "계속" 또는 "휴회"였다고 간단히 선언함으로써, 현장의
19 공지 요건을 피할 수 있다고 해도, 여기서 일어난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¹⁶. 2 월 24 일의
20 제직 모임은 나중에 속개해야 하는 회의로 볼 근거가 없다.

¹⁵ 어떤 경우에도, 이전 회의의 "속개" 조차도 달리 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여전히 3 월 17 일 회의는 그렇지 않았다.

¹⁶ Roberts 규칙 ("RROR")은 회의를 휴회하는 절차, 즉 회의를 나중에 계속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증거물 5 번 KIM 0132-33 참조. RROR 는 다음과 같다. "휴회 된 미팅은 직전 정기 또는 특별 미팅의 세션을 계속하는 미팅이다. 휴회라는 이름은 미팅이 특정 시간 (및 다른 방법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 의해 모임이 '언제까지 휴회' 또는 그 시간과 장소까지 '휴회'가 예약되었음을 의미한다. 정기 회의 또는 특별 회의에서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휴회는 다음날 정기 또는 다음 정기 전에 다른 편리한 시간에 예약할 수 있다. 휴회 시간을 정하기 위해 주제를 채택하고 또는 동의에 의해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

1 2월 24일에 열린 모임은 비공식 중재 간담회였다. 당시 박청직 목사는 교회내 양측의 분쟁을
2 해결하기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¹⁷ 그것은 정당하게 소집된 제직회가 아니었다.

3 2월 24일 회의가 교회 현장의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소집되고 소집된 제직회 회의라는 확실한
4 증거는 없다. 또한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올바르게 휴회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5 셋째, David Kwon 이 강등된 후 해임되어 소집한 2019년 3월 17일의 특별 제직회 당시에
6 제직회원의 수는 56명이었다. 특별 제직회에는 28명이 참석했다. 제직회는 과반수의
7 제직회원으로 정족수를 채워 회의를 열어야 했다. 56명의 제직회원의 절반은 28명이다. 그러나
8 과반수는 절반 이상을 의미하고 56명 제직회의 과반수는 29명 이상이어야 한다. 27명만이
9 참석했다. (David Kwon 은 더 이상 제직회원 또는 전직 제직회 의장이 아니었으므로 출석 한
10 제직회원 28명에 계산되지 못한다.) 즉, 27명의 회원 만이 참석했으며 이는 회의를 하기 위한
11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 정족수가 안되므로 적법한 회의는 없었고 정당한 결정이 아닌 것이다.

12 요약하자면, 이러한 각각의 개별적인 이유들로 인해, 법원은 3월 17일에 열린 제직회에서 취해진
13 조치는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며, David Kwon 을 “복권”하고 김진홍, 구연성,
14 신수언을 (시무안수)집사직에서 해임키 위한 투표는 무효라고 판단한다.

15 마찬가지로, 3월 17일 제직회에서 취한 조치를 “인준”하기 위해 2019년 3월 31일에 소집된
16 특별(임시) 총회는 교회 현장에 위배된다.

17 교회 현장에 따르면, 임시총회는 담임 목사나 제직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열릴 수 있다. (증거물
18 101, Ch. 7, 3 항). 3월 31일에 행해진 임시총회는 그렇게 열리지 않았다. 제직회는 그러한
19 회의소집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담임목사(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나 interim 목사인

규정된 시간까지 휴회 "Id. (강조 원본). 즉, 2월 24일 회의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제직회 였다고 하여도-
그럼에도 정당한 회의가 아님이 분명하지만- 2019년 3월 17일에 속개하는 것으로 "휴회"하기 위해 2
월 24일 회의에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동의 절차는 없었고 채택된 것도 없었다.

¹⁷ 증인신문에 의하면, 2월 24일 박청직 목사에 의해 열린 비공식 중재 간담회에서, 여기에 참석한
제직회원들이 이 회의를 소급하여 공식 제직회로 하기로 동의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러한 회의에 대한
공지 조항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직회가 열렸다. 법원이 이런 것이 정당하게 되었다고
받아들이더라도, 제직회원은 적절한 사전 공지없이 모임을 열은 후 간단히 "공식 제직회" 라고 소급하여
개회할 권한이 없다고 본다. 2월 24일 제직회는 적법하게 공지되고 열린 제직회가 아니기 때문에 2019
년 3월 17일에서 정당하게 속개할 수 있는 회의가 아니다.

1 박목사님이 총회 소집을 한 것도 아니었다. 현장에 의해 담임목사 유고시 대신에 (순서대로)
2 총회를 소집할 권한을 부여 받은 선임 부목사나 집사장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3 3월 31일 임시총회는 3월 17일자에 David Kwon 에 의해 소집되어 졌는데, 그 당시 그는 교회의
4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상태였다. 그가 3월 31일 총회를 소집할 당시 David Kwon 은 교회에서
5 담임목사나 선임부목사를 차치하고도 그 어떤 자격으로도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6 David Kwon 은 그 자신의 해임을 알게 된 후에도 안수집사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여전히
7 그는 선임부목사로 계속 행동했으며 교회 현장을 위반하면서, 마치 교회 위원회 또는 각종 모임의
8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것 같이 행동하였다. David Kwon 은 이렇게 할 아무 권한이 없다¹⁸.

9 또한, 2019년 3월 31일에 총회에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이
10 정당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정회원이라는 것을 신뢰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그 때 투표에
11 참석한 이들은 David Kwon 의 부목사 직위 해지를 철회하고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을 안수집사
12 직위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된 것이란 증거가 없다.

13 마지막으로 피고들은 김진홍은 실제로 교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이사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14 없다는 다소 동떨어진 논거를 별였다. 법원은 이 주장을 거부한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15 증거는 근거가 없었고 신뢰할 수 없다.¹⁹ 김진홍은 교회의 정회원이며 정당하게 임명된
16 집사장으로서 직책을 맡을 자격이 있다.

17 요약하면, 법원은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 그 누구도 집사 직에서 적법하게 해임되거나 해고되지
18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들은 각각 집사장, 서기 및 재무부

¹⁸ 제출된 증거로 살펴볼 때, 교회와 고용관계가 종결된 David Kwon 은 해임된 이후에도 (1)여전히 담임목사인 것처럼 계속 행동한 것, (2)선임부목사의 직책으로 교회 후보에 여전히 나와 있다는 사실, (3)교회 거래은행의 서명권자 지위에서 즉각 삭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어느 것도 해임된 사실과는 아무 상관 관계가 없다. 즉, David Kwon 이 자신이 해임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선임부목사로서 역할을 계속했다는 것, 교회 후보 오류문제도, 교회 은행에서 바로 삭제되지 않은 문제도 그가 정당하게 해임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다.

¹⁹ 신동일 (일명 "Greg") 은 김진홍이 실제로 교회 회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분쟁이 진행되던 어느 시점에 김진홍은 자신이 교회를 떠남으로 소송과 불화가 종식된다면 기꺼이 떠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설령 김진홍이 그런 말을 하였다 해도, 김진홍은 교회에서 사임하거나 그의 회원 자격을 포기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김진홍이 교회 회원이 아니라는 Greg Shin 의 "의견"에 대한 근거는 전혀 없다.

1 팀장으로 시무하고 있다. 담임목사나 선임부목사가 없기 때문에, 김진홍은 집사장으로 지명되어
2 이사회 멤버로 남아 있으며, 구연성과 신수언은 서기 및 재정사역팀장의 직책으로 이사회 멤버로
3 남아 있다. 법원은 또한 David Kwon 이 부목사 또는 선임부목사로 복직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4 안수집사회에 의한 그의 해임은 적법하게 투표 되었으며, 2019 년 3 월 15 일부로 해임결정은
5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6 결 론

7 법원은 교회 이사회가 세 명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원고 김진홍, 구연성, 신수언은 교회
8 이사회 멤버로 적법하게 선출되었고 시무하고 있는 이사회 구성원임을 확인한다. 법원은 또한
9 피고들 중 그 누구도 - David Kwon (일명 권남혁), 이복섭, Harris Kwon (일명 권혁중), Eric
10 Lee(일명 이성호), 이일권 및 신영조를 포함 - 교회 이사회 구성원으로 적법하게 선출되거나
11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음을 확인한다.

12
13 *****
14

Dated: 8/14/2019


MARTHA K. GOODING
Judge of the Superior Court

15